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주요 법 안내

1. 공유교회로 개척할 수 있는 항 신설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⑦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및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신설>

■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인 교역자는 공유교회로 개척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기관 파송 전도사 및 수련목회자 관련 내용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⑤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 파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없다. <신설>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 ③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개정>

【1828】 제28조(진급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 ③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을 받은 후 당해연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정회원에 허입된다. 세계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 **배우자 부모가 시무하는 교회 및 소속기관에도 기관파송 전도사와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입교인 80명에서 50명인 교회로 수련목회자 파송 대상 교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 전 군종사관후보생 진급에 관하여 연회별로 적용이 달라,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로 목사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준회원에 허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전 진급을 했던 이는 현재 진급과정에 머물고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부터 다시 진급과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3. 연회 협동회원의 목사안수 자격 완화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2. 교회개혁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재단편입이 불가 시에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 편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계약서를 제출 하면 협동회원으로 목사 안수가 가능합니다.

4. 자원은퇴 기준 개정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④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 자원은퇴 기준을 30년 재직에서 20년 재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 감리사의 직무 추가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2021년 교리와 장정]

【1220】 제20조(납입방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 최고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 <신설>

【1290】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⑤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 2023년에 개정된 감리사의 직무 16항은 2021년에 신설된 [1290]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5항 내용을 감리사의 직무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에 [1220] 제20조(납입방법)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 2항 5호에 의거 이임 결의의 보류는 2027년부터 가능합니다.

6.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대한 개정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 ③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지방회, 연회, 총회의 회원권이 없다. <신설>
-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명으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신설>

■ 지방회, 연회 회원은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면 회원권이 있습니다.

■ 총회대표는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고 모든 부동산을 편입(불가한 경우 제외)해야 회원권이 있습니다.

■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는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고 모든 부동산을 편입(불가한 경우 제외)해야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연회위원은 연회분과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3항에서 연회 회원에게 부담금만으로 회원권을 부여하였고, 연회분과위원회는 모든 연회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연회분과위원회를 4항에 적용시키면 연회 회원 전체를 편입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되므로 이번 법을 개정한 취지와 다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모든 연회가 통일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여부(불가한 경우 제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와 총회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연회에서 총회로 명단을 제출하기 전 편입여부를 확인 할 때 불가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별첨 :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도표 1부

7. 연회 평신도대표 당연직 확대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 집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및 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 지방회 여선교회장에서 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으로 당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8. 위임장 효력인정 개정

【670】 제1조(개 의)

-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3.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 ③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찬반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에 위임장의 효력이 인정 됩니다.

9. 부담금 조정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교역자 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0.8%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 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2%를 교역자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 본부 부담금은 0.8%, 은급 부담금은 2.2%로 개정하였습니다.

10. 세금 및 과징금 발생에 따른 제재 규정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임대, 처분 등)

- ② 감리교회의 개체교회·기관·단체 등이 취득하여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을 미납하여 체납사항이 발생하면 재산관리자는 즉시 유지재단이사회에 보고하고,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매처분 및 관리권 회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유지재단이사장이 체납교회 담임교역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장로는 해당 지방회 감리사에게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해당교회 교역자와 장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 세금 및 과징금 발생에 따른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1. 소송비용 및 구상권 신설

【0000】 제00조(소송비용의 납부책임 및 회원권 정지)

①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피고발인이 본법에서 규정한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0000】 제00조(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

①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0000】 제00조(소송비용의 완납책임 및 회원권 정지) <신설>

① 소송의 당사자가 본법에서 규정한 각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0000】 제00조(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

①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감리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특정인 또는 특정 의회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손해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 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법원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도록 법을 신설하였습니다.

12. 피선거권자

【1613】 제13조(피선거권)

-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중도 사퇴하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개정>
- 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한다. <개정>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자치기관을 설치한다.

- ④ 자치기관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 ⑤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 연회·총회 자치기관장,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고 모든 부동산을 편입(불가한 경우 제외)해야 출마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확인서는 후보자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13. 선거권자

【1614】 제14조(선거권)

-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여야한다. <개정>
-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선거권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 1. 연회 회원
 -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 3. 연회 회원 외 권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 4. 연회 회원 외 집사로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 5.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이에게 편입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연회회원이 선거권자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역자와 동수가 안 될 경우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회회원 외 장로, 권사, 집사 순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4.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금지사항 개정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로 등록할 이는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다음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 활동 포함)
-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
- ④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개정>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 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개정>
-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개정>
- ③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련 당사자에게 금품이나 협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 ④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 및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개정>

■ 사전선거운동 1~3항은 선거시행공고 전까지 금지합니다.

■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2년 전부터에서 당해연도로 축소하였습니다.

15. 선거일정 축소



■ 선거운동기간이 150일에서 6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 감독 후보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 감독회장 후보 합동정책발표회는 권역별로 3회로 축소되었습니다.

16. 청장년선교회 회원 나이

【2465】 제4조(조직) 이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0000】 제2조(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신설>

- 청장년선교회 회원의 나이를 만 49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릅니다.

17. 남선교회 회원 나이

【2545】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0000】 제2조(경과조치) 제6조(회원)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신설>

- 남선교회 회원의 나이를 만 50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릅니다.

별첨 :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도표

구분		부담금				재산		내용
		지방	연회	본부	은급	편입	불가확인서	
회원권	당회							1. 지방회/연회/총회 회원은 부담금 완납 2. 총회 회원은 재산편입 3. 재산편입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확인서 제출
	구역회							
	지방회	●	●	●	●			
	연회	●	●	●	●			
	총회	●	●	●	●	●	●	
위원 (피선거권)	지방회 위원	●	●	●	●			1. 지방회/연회/총회 위원(이사)은 부담금 완납 2. 연회(연회분과위원회 제외)/총회 위원(이사)은 재산편입 3. 재산편입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확인서 제출
	연회 위원	●	●	●	●	●	●	
	총회 위원	●	●	●	●	●	●	
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지방회	●	●	●	●			1. 지방회/연회/총회 자치단체장 후보는 부담금 완납 2. 연회/총회 자치단체장 후보는 재산편입 3. 재산편입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확인서 제출 4.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는 후보 등록시 제출
	연회	●	●	●	●	●	●	
	총회	●	●	●	●	●	●	
피선거권	감리사	●	●	●	●	●	●	1. 감리사/감독/감독회장 후보는 부담금 완납 2. 감리사/감독/감독회장 후보는 재산편입 3. 재산편입이 불가한 경우는 불가확인서 제출 4. 불가확인서 제출 시기는 후보 등록시 제출
	감독	●	●	●	●	●	●	
	감독회장	●	●	●	●	●	●	
선거권	자치단체장	●	●	●	●			1. 자치단체장/감리사/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는 부담금 완납 2. 선거권자의 재단편입 유무는 확인하지 않는다.
	감리사	●	●	●	●			
	감독	●	●	●	●			
	감독회장	●	●	●	●			